

# 2017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I. 운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II.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징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를 원칙, 비공개는 예외로 운영
  -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로 열거된 정보는 비밀 정보는 아니며 공공기관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공공기관은 공익의 필요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있음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때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공공기관이 하며, 그러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제9조 제1항 각호까지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를 기재

## III. 비공개 기준

- 법 제9조 제1항에서 비밀·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법 제9조 제2항)

## IV.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 1 항 제 1 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비)

#### □ 비공개 유형

1.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2.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단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
4.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5.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24조)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8.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

###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 147 판결)
2.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비공개를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1998. 9. 25)
3. 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례 (1998. 12. 28)
4. 법률의 위임 없이 열람·등사에 대하여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물론 이를 거부하는 행정지침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03. 12. 16.)
5.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은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 2362 판결)
6.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및 예산내역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위 해당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소재지·정원)와 제12조(예산)에 의하여"법률"로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7.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비공개되어야 함

법 제9조  
제1항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비공개 유형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및 회의록 등
2.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 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취약점 등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및 공사경영정보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6. 전시 자동차 동원관련 정보
7. 전시 건설기계 동원관련 정보
8. 임진강 남북 공동 수해방지 협력,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임진강·북한강) 개발 등 북한사업 추진관련 정보
9.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국외개발사업 추진관련 정보
10. 군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없음(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 5114 판결)
2. 누설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 기밀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군사기밀에 해당함.(대법원 2001. 1. 28 선고 99도 4022 판결)
3. 국가기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로서 국가의 안정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함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 204등(병합) 결정)

**법 제9조  
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유형

1. 댐, 수도 등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조사 관련 문서
2.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3. 공사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법집행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 등  
⇒ 비공개  
(Luther v. LRS, No. 5-86-130, Slip op. at 6 (D. Minn. Aug. 13, 1987))
2. 형사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보원 및 비밀수사원의 신원 ⇒ 비공개  
(McQueem v. U.S., 264 F.Supp. 2d 502, 521 (S.D. Tex. 2003))
3. 침수예상 지도(inundation maps)의 공개로 인하여 테러리스트들의 댐에 대한 공격 위험을 증가시켜 하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다고 예상되는 경우 ⇒ 비공개  
(Living Rivers, Inc. v. U.S. Bureau of Reclamation, 245F. Supp. 2d 1313, 1321-1322(D, Utah 2003))
4.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 ⇒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와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 보안유공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되어야 함

5.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 공개

-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6. 경비구역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 사항에 따라 부분공개

(K-water 정보공개심의회, 2013.2.13.)

- 경비구역, 근무형태 등 경비구역의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 과업지시서를 제외한 계약내역 및 시방서 등 일반 사항은 본 조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



**법 제9조  
제1항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 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전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비공개 유형

1. 판결 전 재판 기록에 관한 정보
2.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

2.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 공개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 구 3692 판결)
3. 정보원이나 정보수집기법과 관련된 정보가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비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 구 147 판결)
4.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 공개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 구 3692 판결)

법 제9조  
제1항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현지조치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납세증명서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등
-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직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건강상담표 등
- 인사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심사·회의록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4.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사업추진,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 등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5. 평가·진단·승인·심사·시험 등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6.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7. 직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의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가 있기 전”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대법원 2000. 5. 30 선고)

2.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이외의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3. 3. 14 선고)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2 두 12946)

4.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03. 8. 22. 선고2002두12946 판결)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5.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 공개 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820 ⇒ 비공개(5호, 6호))

\* 회의록 내용 중 자유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나아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까지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위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법 제9조  
제1항제6  
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 비공개 유형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및 양심, 종교 및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2.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생활에 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3.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다만, 설계심의위원회 명단 등 다른 법령에 의거 공개하도록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직원에 관한 정보
  - 특정 직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서, 출근부의 직원성명 등)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결격사유조회,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7. 수도 및 댐용수 공급, 용지보상 및 분양,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9.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감찰, 감사, 민원 등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 사항과 성희롱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사항
10.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11. 개인의 토지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
12. 감사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 정보
13. 사보, 인터넷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사항
14. 기관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1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개인이 권리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 재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됨 (대법원 2003. 12.11)
2.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 됨 (대법원 1997. 5.23)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기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담당공무원 작성의 보고서 등의 지출증빙서류 등에 포함된 개인(공무원 제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01두 6428판결)

4.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 비공개

-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의 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비공개 유형

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등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전적으로 내부관리를 위한 문서
  - 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업무일지, 내부회의 개최기록, 하부기관과의 연락문서 등)
  - 소모품 구입, 내부회의 개최, 여비교통비, 광열비 등 일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유지·역무의 조달과 관련된 회계처리 문서
5. 공공사업에 관한 문서
  - 개별 사업장소, 보상내용이 명확한 것, 용지취득계획, 교섭방침 등 용

지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조사연구결과 또는 다른 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 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동종사업계획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 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관계자의 의견조사결과로서 공개함으로써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

#### 6. 연구에 관한 문서

-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서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00.1.7)
2.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은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는 사항 (서울행정법원 2006. 1. 5)
3.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 등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 공개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인해 공사 등에게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4.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공개 여부  
(수원지법 2005구합 5292) ⇒ 비공개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법 제9조  
제1항제8호**

**부동산투자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를 하도록 함

비공개 유형

1. 수도, 수자원, 단지 등 소관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투자심사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약과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약 내용 및 협의결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0233) ⇒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환경성검토협약과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약 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2.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선고 2007구합6342) ⇒ 공개

-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